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

- 1)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위원장은 수급조절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소집 및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하고자 함

-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되, 긴급 시 서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축의 종류별 소위원회를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인증기관 평가업무 위임·위탁, 권한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안 제17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별표4)
-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정보표시의 권고, 각종 행정처분 명령 등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3) 농식품부장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4)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1,0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로 세분화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부과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축산정책국장	이주명	044-201-2301	010-6458-5015	leejm66@korea.kr
축산환경자원과장	정경석	044-201-2351	010-3587-4059	godjung7@korea.kr
사무관	남기현	044-201-2352	010-4195-4097	khnam@korea.kr
주무관	김소연	044-201-2354	010-6311-0092	young454@korea.kr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통계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무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경제·경영·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으
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6(수급조절협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수급조절협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급조절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협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7(소위원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라 수급조절협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축종별 소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종계, 토종닭,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 위임·위탁대상) 법 제42조의8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5. 그 밖에 무항생제축산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 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5.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6. 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7.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8. 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0. 법 제42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1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의 관리에 대한 조치

1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3. 법 제56조제3항(법 제56조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27조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 중 “3년간”을 “3년(제2호 너목부터 커목까지는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법 제56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법 제56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법 제56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법 제5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법 제5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7호”를 “법 제5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8호”를 “법 제5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9호”를 “법 제56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6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 위반행위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6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2호”를 “법 제56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3호”를 “법 제5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4호”를 “법 제56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5호”를 “법 제56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에 위반행위 너목부터 위반행위 서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더. 법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한 실적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0 호	30	50	100
러. 법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1 호	30	50	100
머.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을 위반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2 호	30	50	100
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법 제4 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 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3 호	150	300	500
서.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 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4 호			

별표 4 제2호에 서목1) 및 서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2)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00	200	300

별표 4 제2호에 위반행위 어목 및 위반행위 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1 항 또는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 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5 호	150	300	500
저.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6 호			

별표 4 제2호에 저목1) 및 저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 한 자		150	300	500
2)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 니한 자		100	200	300

별표 4 제2호에 위반행위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 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7 호			
---	-------------------	--	--	--

별표 4 제2호에 처목1) 및 처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2)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0	300	500

별표 4 제2호에 위반행위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56조제2항제18호	150	30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4(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① 수급조절협의회의</u>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u> <u>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u> <u>위촉한 사람으로 한다.</u> 1. <u>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 및</u> <u>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u> <u>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u> <u>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농림축</u> <u>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u> <u>람</u> 2. <u>기획재정부에서 물가에 관한</u> <u>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u> <u>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u> <u>지명하는 사람</u> 3. <u>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에</u> <u>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u> <u>상 공무원으로서 통계청장이</u> <u>지명하는 사람</u> 4. 「<u>농업협동조합법</u>」 제161조2 <u>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u> <u>서 축산물 수급관리 업무를</u> <u>담당하는 집행간부</u>

5.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무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경제·경영·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신 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6(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

<신 설>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7(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축종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종계, 토종닭,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신 설>

다.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관 평가 위임·위탁대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5. 그 밖에 무항생제축산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 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5.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6. 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 · 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7.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판매 · 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

료제출 요구

8. 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0. 법 제42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1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의 관리에 대한 조치

1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3. 법 제56조제3항(법 제56조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

<신 설>

① ~ ④ (생 략)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생 략)

<신 설>

과 · 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
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
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56조제1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u>사무</u> 2. <u>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u>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 56조제1항 및 제2항</u>----- -----.
---	--